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보도자료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|
|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| 2019.5.15.(수) |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책 임 자 | 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 | 담 당 자 | 강 련 호 사무관 (02-2100-2986) |
| |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 | | 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36) |

**제 목 :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를 유예하여
설립 초기 규제적용 부담 완화**

- 은행업감독규정·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

-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
- 바젤Ⅲ 자본규제, 순안정자금조달비율, 레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 까지 유예하고,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영업 3년차부터 전면 적용

1. 규정 개정배경

- 금융위원회는 '19.5.15일(수)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은행업 감독규정」 및 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 개정안을 의결
 - '19.1월 「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를 추진
 -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용기간이 필요
 - 설립 초기 조직·인력 운영, 영업활동,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
 - 영업행위규제,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

- 특히,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·비용 등이 소요되며,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
- 이에 따라,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용기간을 부여하였고, 기존 인터넷전문은행(케이뱅크·카카오뱅크, '17년 영업개시)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용기간 부여
- 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용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

2. 바젤Ⅲ 규제 부과 현황

□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①자본규제, ②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, ③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, ④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

① 자본규제 :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(4.5% 이상), 기본자본비율(6% 이상), 총자본비율(8% 이상)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, 추가자본 요구항목(미준수시 배당 제한)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(2.5%), 경기대응완충자본(현재 0%), D-SIB 추가자본(D-SIB로 지정된 경우, 1%)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

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iquidity Coverage Ratio) :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 유동성자산(현금, 국채 등)의 비율을 100% 이상 유지

③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et Stable Funding Ratio) :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% 이상 유지

④ 레버리지비율(Leverage Ratio) :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(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)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% 이상 유지

□ 바젤Ⅲ 규제의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·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되었으며,

- '17년 영업을 개시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의 종류별로 2~3년씩 유예

○ 자본규제

| 시기 | 일반은행 | 기존 인터넷전문은행('17년 영업개시) |
|-------------|--|--|
| '13년 ~ '19년 | (보통주자본/기본자본/총자본비율) • 2개년간('13년~'14년) 단계적 적용('15년 전면 적용) (추가자본* 적립) • 3개년간('16년~'18년) 단계적 적용('19년 전면 적용) | 3개년간 유예(바젤 I 적용) |
| '20년 이후 | 바젤 III 전면 적용 | (추가자본* 적립) • 3개년간('20년~'22년) 단계적 적용('23년 전면 적용) |

* 추가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,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D-SIB 추가자본의 합

○ 유동성커버리지비율

| 시기 | 일반은행 | 기존 인터넷전문은행('17년 영업개시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'15년 ~ '19년 | • 4개년간('15년~'18년) 단계적 적용('19년 전면 적용) | • 2개년간('17년~'18년) 단계적 적용(수준 완화, '19년 전면 적용) |
| '20년 이후 | 전면 적용 | 전면 적용 |

○ 순안정자금조달비율/ 레버리지비율

| 시기 | 일반은행 | 기존 인터넷전문은행('17년 영업개시)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'18년 ~ '19년 | 전면 적용 | • 3개년간('17년~'19년) 유예 |
| '20년 이후 | | 전면 적용 |

3.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 III 적용시기 유예

<적용시기 유예 예시(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'20년중 영업개시시)>

|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~'25년 | '26년 이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자본규제 | 유예(바젤 I 적용) | | | 바젤 III 단계적 적용 | 바젤 III 전면 적용 |
| LCR | 80% 이상 | 90% 이상 | 전면 적용(100% 이상) | | |
| NSFR/ 레버리지비율 | 유예 | | | 전면 적용 (NSFR 100% 이상, 레버리지비율 3% 이상) | |

□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

○ (자본규제)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(영업 2~3년차)에 걸쳐 바젤 I 을 적용하여, 바젤Ⅲ는 적용 유예*

*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 지주회사에도 적용

-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(영업 4년차)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

- 영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(영업 7년차)부터 전면 적용

<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일정(안)>

| 적용시기(회계연도) | 보통주자본 | 기본자본 | 총자본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영업개시연도부터 영업 3년차까지 | - (바젤 I) | - (바젤 I) | 8% (바젤 I) |
| 영업 4년차 | 5.125%+K*1/4 | 6.625%+K*1/4 | 8.625%+K*1/4 |
| 영업 5년차 | 5.75%+K*1/2 | 7.25%+K*1/2 | 9.25%+K*1/2 |
| 영업 6년차 | 6.375%+K*3/4 | 7.875%+K*3/4 | 9.875%+K*3/4 |
| 영업 7년차 이후 | 7.0%+K | 8.5%+K | 10.5%+K |

* K :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

○ (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) 영업개시연도에는 80% 이상, 이후 1개 회계연도(영업 2년차)에는 90% 이상으로 기준 완화*

-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(영업 3년차)부터 전면 적용

○ (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)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(영업 2~3년차)에 걸쳐 적용 유예

-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(영업 4년차)부터 전면 적용

○ (레버리지규제) 영업개시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(영업 2~3년차)에 걸쳐 적용 유예

-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(영업 4년차)부터 전면 적용

<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·레버리지규제 일정(안)>

| 적용 회계연도 | LCR | NSFR | 레버리지비율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영업개시연도 | 80% 이상 | - | - |
| 영업 2년차 | 90% 이상 | - | - |
| 영업 3년차 | 100% 이상 | - | - |
| 영업 4년차 이후 | | 100% 이상 | 3% 이상 |

4. 개정규정 시행시기

-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·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고시한 날 ('19.5.21일)부터 시행될 예정
-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·평가할 예정

| | | | |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 출처표시 |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|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 | 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